

서울고등법원

2000. 12. 19. 판결선고	인
2000. 12. 19. 원본영수	

제 1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0나35223 채무부존재확인

원고, 항소인 \*\*보험주식회사

서울 영등포구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

피고, 피항소인 유\*\*

수원시 권선구

소송대리인 변호사

변 론 종 결 2000. 12. 5.

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. 6. 15. 선고 99가합2056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. 4. 9.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### 이 유

1.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2. 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12. 19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오세빈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이상주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채동헌      \_\_\_\_\_